

**보도자료**

2014년 1월 28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규제개혁법무팀 김형국 사무관(☎2110-1391) room@kcc.go.kr

**- 방통위,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 -**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경재)는 1월 28일(화)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, 안양옥 前이사(교총 추천) 사퇴로 공석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'EBS'이라 함) 보궐이사에 백복순(白福淳)씨를 선정하기로 의결함

\* 약력은 붙임 참조

-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EBS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
-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한 백복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'15. 9. 14일까지임

**< EBS 이사 관련 EBS법 규정 >**

**제10조 (임원의 임기)** ①사장·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**3년**으로 한다.

②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**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
2. 정당법에 의한 당원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**제13조 (이사회 설치 및 운영)** ①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**이사회**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**9인**으로 구성한다.

③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**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**

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,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⑦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붙 임 : EBS 보궐이사 약력 1부. 끝.

붙임)



○ 성명 : 백복순 (白福淳)

○ 생년월일 : 1957. 02. 10.

○ 출생지 : 경기 남양주

○ 학력

'74. 서울동대문상업고등학교 졸업

'78. 건국대학교 농업교육과 졸업

'83.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

○ 주요경력

'81 ~ '82 용인 용동중학교 교사

'0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

'07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대책위원회 실무위원

'11 ~ '12 한국교육신문사 사장

'12 ~ 현재 재해구호협회 감사

'12 ~ 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

'83 ~ 현재 한국교총 사업본부장, 복지관리본부장, 사무총장